



보도해명

- 광역교통기획관실 광역교통정책팀
 - ☎ 02-2110-8711~3
 - youlahn@moct.go.kr
-
- 총 1매

“신규 경제특구 모든 건축물 광역교통부담금 부과” 사실과 달라

□ 보도내용('06.2.17. 한국경제 2면)

신규 경제특구 모든 건축물 광역교통부담금 부과기로

- 오는 4월부터 새로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 아파트·상가·오피스빌딩등 모든 건축물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
-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’을 개정중

□ 해명내용

- 새로 지정하는 경제특구내의 건축물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님
 - 현재 개정중인 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’에도 이 같은 내용은 없음
-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도시권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 것으로
 - 금년에는 대도시권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상복합 건물에만 부과대상으로 추가

광역교통기획관